

영국사례 1

**‘부부교환 모임’은 공공의 관심사로 이를
잠입취재한 것은 합법적인 언론활동으로 볼 수 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Lutterworth의 Liberty Hotel의 소유자인 Neil Armstrong씨가 The News of the world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호텔에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부교환모임’에 위 신문의 기자 2명이 취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참가하여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보도윤리강령 제10장 ‘잠입취재의 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 행사는 대단히 합법적인 것으로 공공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항상 공개했고, 과거에는 기사를 초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he News of the world지는 평범한 호텔에서 가끔 개최되는 부부교환모임은 일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취재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잠입취재한 것은 합법적인 언론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기자들이 신분을 밝혔을 경우 만족할 만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진 취재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일반인들도 우연히 이 모임에 참여했을 수도 있으므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언론사측 방어논리를 반박했다. 즉, 불만신청인은 부부교환 모임은 회원들에게만

공개되어 있으며 호텔에 들어오는 누구든 모임의 성격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사실, 모임행사 동안은 회원이 아니라면 로비를 지나갈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비가 바라보이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의 가장 중요한 불만은 기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그들을 감독할 수 없었던 점이라고 판단했다.

보도윤리강령 제10장은 기자의 취재행위에 관한 것으로, 불만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들이 호텔지배인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회원신청서에도 단지 자신들의 이름만 게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이 운영하는 부부교환모임은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이를 취재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잠입 취재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언론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영국사례 2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불만신청은 이유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Louise Miliband 여사가 The Mail on Sunday 2005년 1월 2일자 기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보도 윤리강령 제3장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The Mail지는 기사에서 예비내각의 장관인 David Miliband씨 부부의 입양 문제를 보도하면서 부인의 건강에 관해 자세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건강문제는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관심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The Mail지는 이 보도로 인해 불만신청인에게 고통을 안겨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고,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약속했으나, 불만신청인은 이를 거절했다. 불만신청인의 건강에 관한 자료는 그녀 부친의 친구가 제공한 것이

고 The Mail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내각의 대변인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사는 불만신청인의 건강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도했으며, 국제입양문제가 공공의 관심이 되고 있기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신청인의 건강문제는 극히 사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개가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문제가 공공의 관심사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제의 기사는 이 두 조건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가족 친구가 미국에 있는 기자에게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불만신청인이 공개에 대해 동의했음을 암시한다는 언론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문제의 친구가 불만신청인의 동의하에 말을 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예비내각 공보관실로부터 불만신청인의 건강문제에 대해 보도해도 좋다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언론사가 그 뉴스를 동정적으로 다룬 것은 부적절했다. 따라서 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신청인의 건강상태를 동의 없이 보도해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 보도윤리강령 제3장을 위반했다는 불만을 인정했다. □

영국사례 3

범인체포현장 취재기사에서 설사 범인의 신원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불만처리위원회는 Grimsby 지역에 살고 있는 Marks Balls씨

가 The Grimsby Telegraph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The Grimsby Telegraph지는 2004년 11월 29일자 『경찰 5명의 축구장 홀리건 체포』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다수의 홀리건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홀리건 가운데 하나인 불만신청인은 위 기사가 자신의 집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었다며 이는 보도윤리강령 제3장 사생활의 장을 위반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은 본문기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거리의 이름이 공표되었고, 함께 게재된 사진에서 자신의 집 주소가 드러나 있으며, 신문사 웹 사이트에 올라 있는 사진에도 자신의 집 주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 체포과정을 동행 취재했다고 밝히면서, 기사와 현장 사진 어디에도 불만신청인은 물론 불만신청인의 집주소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후 웹 사이트에 올려놓았던 사진을 삭제했으며, 신청인에게 공적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독자들이 신문 및 웹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와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다면, 불만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사진 설명 기사에서 그 현장이 불만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밝히지 않았고, 사진에 불만신청인의 집 주소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12개 지역에서 체포 작전이 있었다고 보도하는 등 불만신청인의 신원을 적시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불만신청인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공표한 것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한 현장이라는 점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다면 이는 억지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즉, 체포가 이루어지는 동안 불만신청인의 이웃이나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에 상황을 알 수 있기에, 이는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된다. 따라서 이 보도가 불만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더구나 경찰이 동행 취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다. □

영국사례 4

적나라한 사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군사학교 교사 관련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불만처리위원회는 The Daily Mirror지 2005년 1월 15일자 『적나라한 사진 스캔들의 주인이 된 선생님』 제하의 기사가 보도 윤리강령 제1장 정확성의 장 및 제3장 사생활의 장을 침해했다며 한 부인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군사대학 교사인 불만신청인의 적나라한 사진이 학교 당국에 의해 발견되어 정

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불만신청인의 사진들 가운데서 얼굴 사진만을 뽑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사진들은 친구가 보낸 것으로 언론사가 보도하기 전에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진의 보도는 그녀 자신의 사생활

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까지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 기사는 마치 그녀 자신이 그런 성난 이미지가 공표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언론사측은 불만신청인의 성난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을 최대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문제의 기사는 학교측 대변인에게 확인한 것이고 군사학교로부터 그녀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사화하기에 무리가 없는 소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는 불만신청인이 그런 성난 이미지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로 인해 자신이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직업과 사생활은 별개의 것이며, 사진이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학교측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불만처리인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의 사진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녀의 행위는 문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

라서 위원회는 정직처분의 배경을 기사화한 문제의 기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불만신청인의 모든 사생활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논쟁의 대상이 된 사진들은 적나라했고, 어느 정도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만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고자 할 때에는 불만신청인의 사생활과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균형있게 보도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얼굴 사진만을 게재한 것

은 언론사의 정확한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으로 불만신청인이 받게 될 수치감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 위원회는 보도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한편 정확성의 장을 위반했다는 불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문제의 기사는 불만 신청인이 성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보여 주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확성의 장 또한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

호주사례 1

불만신청인의 견해가 토론의 대상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언론사의 반박문 게재는 정당한 언론활동이다

호주신문평의회는 Tony Kevin씨가 The Australian지 2004년 11월 24일자 여론란에 게재된 Janet Albrechsten씨의 『생각없는 판단』 제하의 칼럼과 그 칼럼에 대한 자신의 독자투고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칼럼에서 Albrechsten씨는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선제공격은 범죄라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는 생각 없

는 반미주의자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Albrechsten씨는 “Kevin씨는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단순히 팔루자에 대한 공격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1944년 나치에 의한 바르샤바 공격과 1999년 러시아군의 체첸 수도인 그로즈니에 대한 공격과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팔루자에 대한 공격이 전쟁범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나치에 의한 바르

샤바 공격과 비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참을 수 없는 일이며, 지적인 성격 파탄자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정치적 이유만 고려하는 단순하고 생각 없는 반미주의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불만신청인은 Sydney Morning Herald지에 게재한 독자 의견기사에서 팔루자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전쟁범죄라 주장하면서,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또한 이러한 전쟁 범죄에 도덕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독자투고형식의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는 언론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350자에 달하는 투고문을 보냈다. 그러나 언론사측은 이를 150자로 줄여

2004년 11월 25일자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편집된 투고문은 미군의 팔루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 중 입증할 수 없는 주장만 제기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신의 투고내용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The Sydney Morning Herald지와 자신의 웹 사이트 그리고 Sydney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의견은 토론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 대해 다른 언론사가 반박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정당한 언론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투고기사의 경우 그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리라고 밝히면서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 보상금을 부모들이 남용했다고 보도했다. 교회에서 지불한 2백10만불의 보상금 중 일부가 수영장 사용료, 해외여행경비 또는 저당금을 갚는데 사용되었다고 보도했다. 보상금은 수표로 가족들에게 지불되고 있고 교회는 이 보상금이 아동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당한 아동들의 부모들인 신청인들은 문제의 기사가 대단히 악의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단정적이고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고, 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모든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자신들의 인간관계와 재정문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언론사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듣고 기사화했다면 좀더 정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불만신청인들 중 누구도 그 기사가 오보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으며, 취재원들이 그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호에 문제의 기사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신문사가 보상금을 남용한 부모들을 비난할 자격이

호주사례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성폭행당한 아동들의 부모가 The Independent Weekly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델라이데 지역에서 발행되

는 위 잡지는 2004년 11월호 『성폭행 보상금을 남용한 부모들』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 버스 운전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어린이들에게 지역 천주교에서 지급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 3건의 독자투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어쨌든 언론사측은 특정 부모들을 거론하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가족을 특정하고, 그 부모들로부터 온 항의 편지를 게재한 것은 남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증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신문평의회는 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정하고 균형 있는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언론사는 아동들의 부모의견을 기사에 반

영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교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의 남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남용 혐의가 있는 부모들을 직접 취재했어야만 했다. 신문평의회는 언론사가 이러한 노력을 했더라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기사가 작성·보도되었다는 불만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 없이 불만신청인의 신원을 공포하였다며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

이러한 정책은 수립된 바 없으며, 이는 자유당 정책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보도에 앞서 Brown의원에게 녹색당 주요 정책 보고서를 요구했으나, 녹색당은 웹 사이트를 참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웹 사이트의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만 신청인의 불만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다음 연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Brown의원이 기자 회견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언론사 측은 수정 없이 보도했다. 이 기사에 대한 Brown 의원의 반박 기사는 다음 달에 보도되었다.

신문평의회는 위 기사는 대단히 부정확하며, 그 결과 평의회 보도 기준, 즉 기사가 정확하기를 조사하고, 부정확한 보도가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며, 공공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는 등의 보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대해 언론사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평의회는 이를 기각했다. □

호주사례 3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주신문평의회는 녹색당 상원의원인 Bob brown씨가 The Herald Sun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The Herald Sun지는 2004년 8월 31일자 『녹색당, 불법의약품 지지』 제하의 기사에서 녹색당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고, 이 기사는 2004년 연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은 첫째, 법인세를 달러당 49센트까지 인상할 것이라

고 보도했으나, 이는 현재 녹색당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덜 먹고, 기업가들로 하여금 철도, 선박 같은 대안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권장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를 강제로 실시할 예정은 아니다. 셋째, 사업이민을 줄이고 주택세를 부과하며, 1995년 수준으로 사회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보도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수립된 적이 없다. 넷째, 인구를 2천만명으로 제한한다고 보도했으나